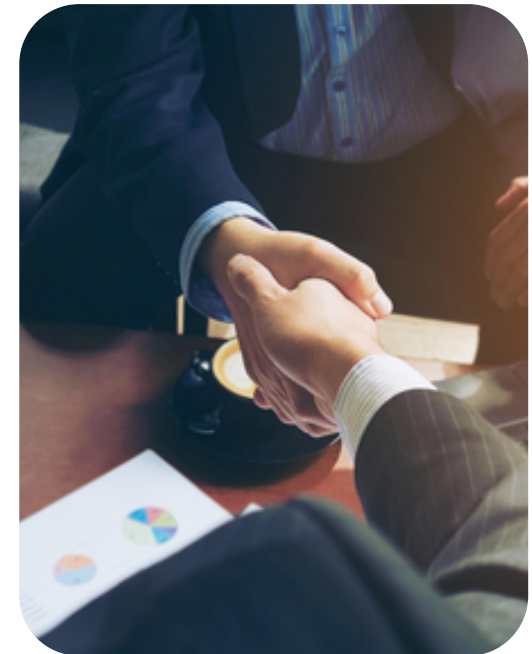




NEWS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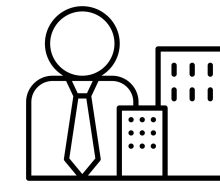


특수 관계인 거래 - 시행령 제255/2026/ND-CP호

특수 관계인 거래란?

특수관계거래란 특수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다음과 같은 거래를 말합니다. 상품의 매매·교환·임대·임차·대여·차용·양도·이전 및 용역 제공; 대출, 대여, 금융서비스, 금융보증 및 기타 금융상품 거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매·교환·임대·임차·대여·차용·양도·이전; 자산, 자본, 노동력 등 자원의 공동 매입·매도·사용에 관한 합의 및 당사자 간 비용 분담. 다만, 국가의 가격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상품·용역의 거래로서 가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는 제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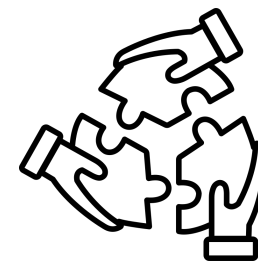
신고 대상 특수관계 그룹:



- 직접 또는 간접으로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 최대주주가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 지분 25% 이상에 해당하는 자본양도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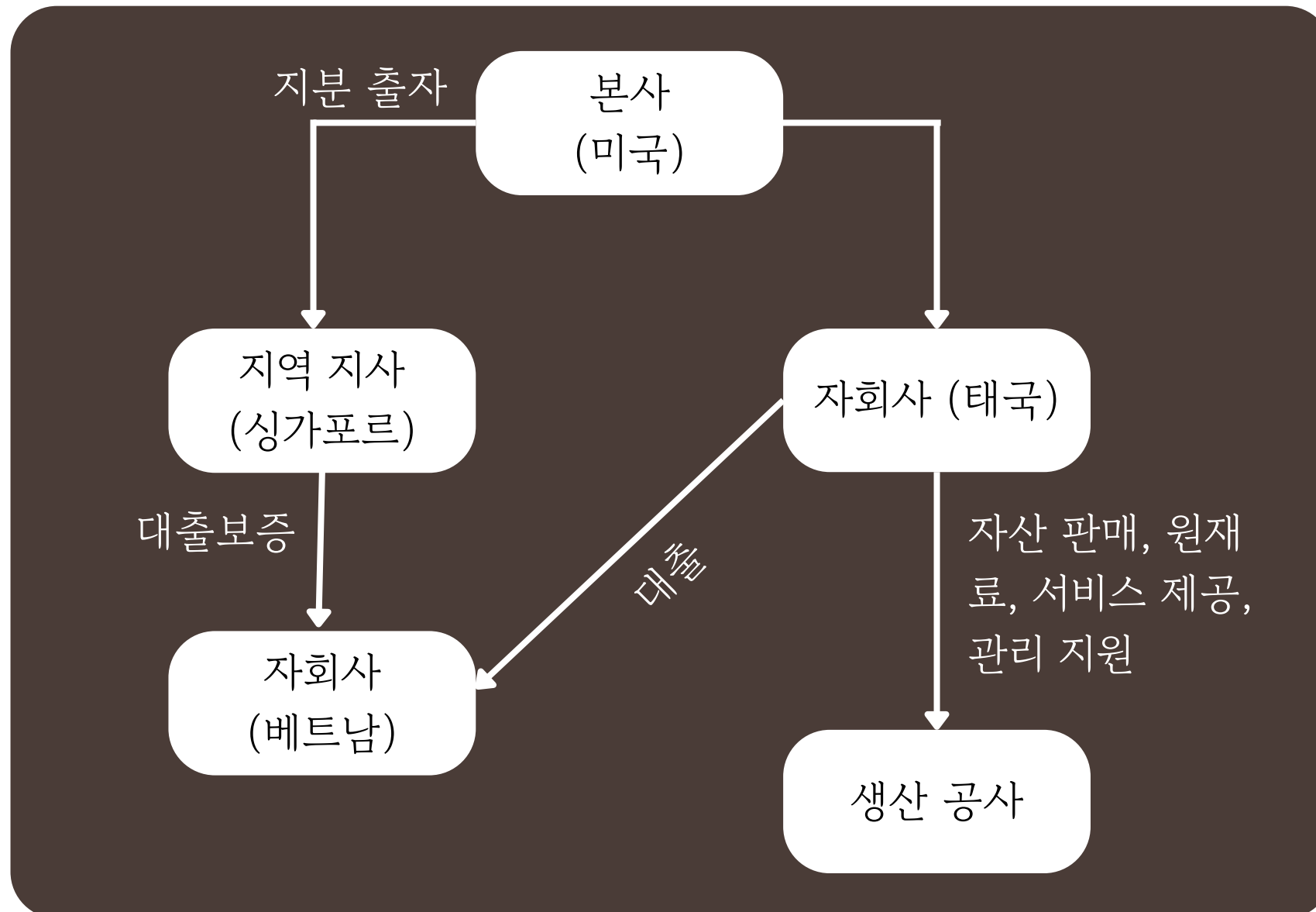
- 자본 25% 이상에 해당하는 대출 또는 대출보증
- 중장기 대출 총 잔액이 50% 이상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 중 출자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대여/차입



- 동일한 개인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들
- 가족관계에 있는 개인들에 의해 지배·운영되는 두 기업
- 경영진의 50% 이상이 동일하거나, 제3자에 의해 지정된 두 기업



- 신용기관법에 따른 신용기관과 그 자회사, 지배기업 또는 계열회사



특수관계거래 신고 면제 경우

01. 특수관계거래가 아닌 경우

- 대출자/보증인이 신용기관이며, 차입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출자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 신용기관과 차입 기업이 제3자에 의해 동일하게 지배·경영되지 않는 경우
- 채권자/보증인이 국가 100% 출자 기업인 경우

02. 신고 면제 가능 경우

- 국내 특수관계자와만 거래하고,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며, 세제우대를 받지 않는 경우
- 사전가격합의(APA)를 체결하고 보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경우
- 세이프하버(Safe Harbour) 조건 충족 (매출액 5,000억 동 미만이고 최소 이익률 달성)
- 매출액 500억 동 미만이고 특수관계거래 규모가 300억 동 미만인 경우



특수관계거래에서의 CbCR(국가별보고서) 작성이란 베트남에 최상위 지배기업을 둔 다국적기업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기업이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과세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별보고서

매출액 기준: 750.000.000 Euro

(기존 기준인 18조 동 대신)

OECD 기준에 근접하고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부합하도록 조정

형식 및 제출 기간

- XML 암호화 형식으로 제출
- 최상위 지배기업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늦어도 12개월 이내 제출

신고대상자 통지

- 신고의무가 최초로 발생한 시점에 1회만 제출
- 의무의 변경 또는 종료 시 갱신 제출
- 늦어도 90일 이내

3단계 특수관계거래 문서

데이터 우선 원칙:

- 증권시장에 공개된 기업 정보·데이터, 국내외 상품·용역 거래소에 공시된 정보·데이터, 국가데이터베이스 정보, 국내 각 부처·기관 또는 기타 공식 출처가 공개한 정보
- 세금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4조 제15항에 규정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 세금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35조 제2항에 규정된 세무관리 데이터베이스

CbCR (국가별보고서)

전 세계적인 이익 배분 현황 및
각 거주국에서 실제로 납부한
세액에 대한 전체 그림

Master File (글로벌 문서)

전체적인 그림: 그룹의 조직구조, 무형자산(IP) 전략 및 그
룹의 핵심 재무활동

Local File (국가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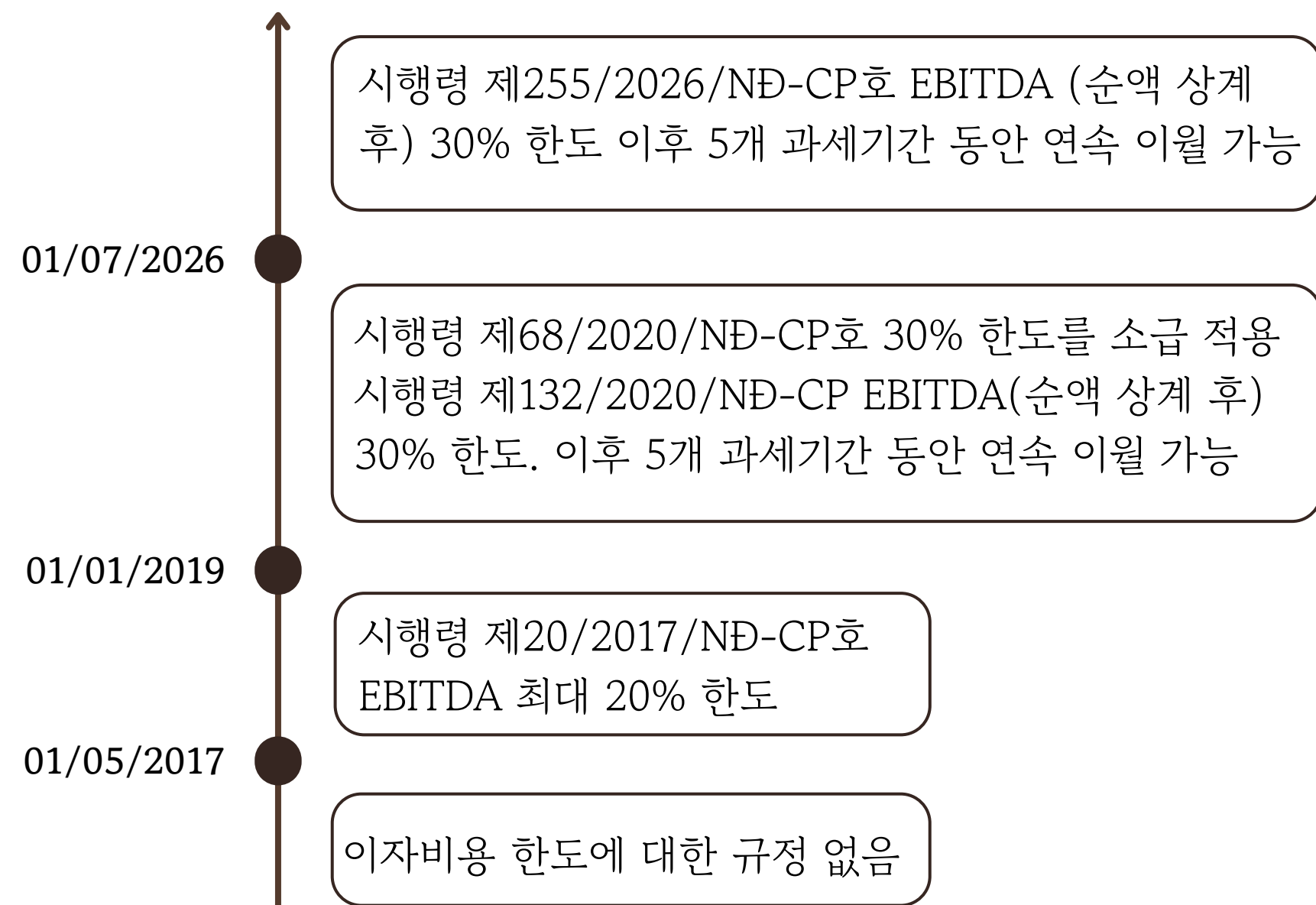
FAR 분석(기능·자산·위험) 및 벤치마킹 초점: 베트남 내 납세자의 정보를 직
접 평가

시행령 제255/2026/ND-CP호 신규정

항목	시행령 제132/2020/ND-CP호	시행령 제255/2026/ND-CP호	신규정
조정 범위	특수관계거래 가격 결정, 신고 및 문서에 관한 규정	세무관리 원칙, 특수관계거래, 국가별 보고서(CbCR), 문서 및 신고에 관해 더욱 완전하게 규정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세무관리 내용을 전면적으로 체계화
과세당국의 관리 원칙	관리·검사·조사 원칙을 직접 규정	2025년 세금관리법에 따라 시행하도록 준용(참조) 규정	새로운 세금관리법과 통일되며, 시행령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음
특수관계거래 개념	적용범위 부분에 규정	제4조에 편입하고, 관련 개념을 보완·완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 규정과의 통일성 확보
특수관계 관계	대출/대여 경우만 규정	소유주 출자지분의 10% 이상 차용/대여 경우를 추가; 아울러 부실채권 처리를 전담하는 국가 100%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특수관계로 보지 않는 경우를 추가	특수관계 판정 기준을 확대하고 명확화
국가별 보고서(CbCR)	매출액 18조 동 이상 기준, 면제 사유 및 제출 방식에 대한 규정 미비	7억 5,000만 유로 기준 적용, 면제/제출 의무 사례 보완, XML 형식 전자제출 및 통지 서식 규정	OECD 기준에 근접하고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부합
특수관계거래 가격결정문서 작성 면제	매출액 2,000억 동 미만이고 여러 조건 충족 필요	기준을 5,000억 동 미만으로 상향하고, "단순 기능으로 사업하는 경우" 요건 삭제	문서 작성 면제 대상 확대, 준수비용 절감
특수관계거래 가격결정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사용 우선순위 미규정	국가데이터베이스 추가 및 우선순위 규정: 공개데이터 → 상업데이터 → 과세당국 데이터 순	특수관계거래 가격결정 시 투명성 및 통일성 강화
납세자 지원	주로 위험관리 방식 위주	자발적 준수 지원 프로그램 신설, 업종별 이익률 공표, 신고 지원 및 데이터 보안 강화	현대적 관리 모델로 전환하며 납세자 중심 방향으로 이동

이자비용 한도 규정

납세자에게 해당 과세기간 중 발생한 예금이자 및 대출이자를 차감한 후의 총 이자비용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을 산정할 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권장

제재 수준



시행령 제125/2020/ND-CP호는 세무등록, 세금신고 절차 위반 및 보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매우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 과태료 외에도, 그보다 수백 배 더 큰 손실은 바로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를 추징하고, 추가 세액에 대해 하루 0.03%의 연체가산세를 부과할 위험입니다.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



특수관계거래 문서 준비
세무결산 시점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계약서
- 가격정책
- 국가별 문서
- 글로벌 문서
- 벤치마킹

모회사와의 거래 검토
예시: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항목

- 경영관리 수수료
- 소프트웨어 사용료
- 브랜드(상표) 사용료

입증해야 할 사항

- 실제로 용역이 발생했는지
- 실질적인 이익이 있었는지
- 가격이 시장 가격에 부합하는지

사내 대출 검토

예시: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출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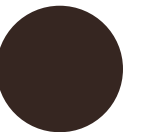
- 대출금액: 1,000억 동
- 이자율: 12%

시장 이자율은 8%인 경우, 과세당국은 이자와 과세소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룹 내부 용역

예시: 인사(HR), IT 등에 대해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 연간 5억 동
- 공제 인정받으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계약서
 - 인보이스
 - 지급증빙서류
 - 업무보고서 등



감사드립니다!

시행령 제255/2026/ND-CP호 기존의 법적 체계를 대체할 뿐만 아니라 영향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문서를 준비하는 것은 기업이 세무조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다가 향후 과세기간의 준수비용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또 보세요

새로운 규정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안내받고, 귀사에 적합한 방안을 세우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 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 및 리스크 검토

